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단수여권 발급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7820호, 2021.1.5. 공포)됨에 따라, 긴급여권의 규격, 국외위법행위 종류,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제도 개선 등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긴급여권 신설 반영

- 1) 비전자여권으로 발급 가능 여부 명시(안 제3조제2항제1호)
- 2) 당일 발급 사유 및 발급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안 제13조)
- 3)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여권 분실자 및 긴급한 사유 발생자를 삭제
(안 제16조제2호 및 제3호)

나. 국위손상자 여권제한 기준 신설

- 1)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 2)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기간 명시(안 제23조의3 신설)

다. 병무 관련 여권발급 제도 개선

- 1)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의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안 제6조제2항제2호)
- 2)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 3)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2호)
- 4)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서 「병역법」상 해당자 및 단수여권 발급대
상 예외 대상 삭제(안 제13조)

라. 기타 현행 법령 미비점 보완

- 1)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 구체화(안 제3조의2)
- 2) 여권법 용어 정비로 인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 3) 수수료 면제 가능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유 명시(안 제38조)
- 4)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조정(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24면으로 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은 14면”을 “24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여권: 청색(12면)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

대통령령 제31262호(2021.12.21.시행예정) 제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24면으로 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은 14면”을 “24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여권: 청색(12면)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국외 체류 또는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외이주로 인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외국학교, 외국회사, 해외학술단체 등(이하 “외국학교등”이라 한다)에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표기로 로마자성명을 등록한 사람으로서 외국학교 등에 등록한 로마자성명과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외국학교 등에 등록한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1. 그 밖에 동명이인이 외국에 입국규제자로 되어 있는 경우, 군무원으로서 신분증의 로마자성명과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외국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5장 단수여권”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긴급여권의 발급대상자)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긴급여권 신청자의 여행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 체류중인 친족의 중대한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 긴급여권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의2 다음에 “제5장 단수여권”을 삽입한다.

제1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3항제2호의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외국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하 “국위손상”이라 한다)을 발생시킨 사람(이하 “국위손상자”라 한다)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실
2.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 시정, 배상, 사죄 요청 등을 제기한 사실

3.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사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행위

2.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 행위

3. 마약 관련 범죄 행위

4. 출입국 관련 범죄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의 외국 법령 위반 행위로써 중대한 국위손상을 발생시킨 행위

제23조의3(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기간)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위손상자가 외국에서 국내법상 법정형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3년

2. 국위손상자가 외국에서 국내법상 법정형 단기 1년 미만인면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년

3.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 2년

4. 국위손상자가 외국에서 국내법상 법정형 단기 1년 미만인면서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1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의 내용

및 횡수, 국위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항의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여권 등을 재발급 받는 사람
3. 여권발급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잘못된 여권 등을 발급받은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
· 제한되는 경우
2.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

별표 제2호의 구분란 “단수여권”을 “긴급여권”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제3호가목의 여권발급수수료의 국내란 “5,000원”을 “23,000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제3호가목의 여권발급수수료의 재외공관란 “5달러”를 “23달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제3호가목의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란 “1,100원”을 “5,060원”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비전

자 단수여권”을 “긴급여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대통령령 제31262호 여권법시행령(2020.12.21. 시행)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1262호 여권법시행령(2020.12.21.시행) 중 개정령의 시행일은 2021년 7월 6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9조, 제12조, 제13조에 대하여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령 제31262호 여권법시행령(2021.12.21. 시행)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1262호 여권법시행령(2021.12.21.시행예정) 중 개정령의 시행일은 2021년 12월 21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 ② (생략)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1. 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24면 또는 4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u>24면으로</u> 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은 <u>14면으로</u> 한다.	1. ----- ----- --. -- <u>24면</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u>여행증명서: 연청색(10면)</u>	4. <u>긴급여권: 청색(12면)</u>			
<u><신 설></u>	5. <u>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u>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① ----- ----- ----- ----- ----- ----- ----- ----- -----.			

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 8. (생 략)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

-----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국외 체류 또는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
--

3. ~ 8. (현행과 같음)

9. 해외이주로 인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 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외국학교, 외국회사, 해외학술단체 등(이하 “외국학교등”이라 한다)에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표기로 로마자성명을 등록한 사람으로서 외국학교 등에 등록한 로마자성명과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 설>

② · ③ (생략)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생략)

외국학교 등에 등록한 로마자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
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1. 그 밖에 동명이인이 외국에
입국규제자로 되어 있는 경우,
군무원으로서 신분증의 로마
자성명과 여권의 로마자성명
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
우 등 외국 출입국 또는 체류
를 위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사증(VISA)의 취득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25세 이상으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2. -----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 5년

<삭 제>

<삭 제>

<삭 제>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
충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
람: 5년

나.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보충역으로서 복
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
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
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
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
일까지

4. ~ 7. (생략)

③ (생략)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
할 수 있다.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

-----.

-----.

1. · 2. (생략)

3.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
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4. (생략)

② (생략)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①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
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
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생략)

2.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
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만료일까지

3. (생략)

② (생략)

제5장 단수여권

제13조(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 3호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방 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우수문화예술인

나. 국제경기 참가나 국외 전지훈련을 위하여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을 하여야 하는 국가대표선수

2. 「병역법」 제58조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후보생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

<신 설>

<신 설>

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
급할 수 있다.

1. (생 략)

제13조의2(긴급여권의 발급대상
자)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
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
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
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6조제1
항제5호에 따른 긴급여권을 발
급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긴급여권 신청
자의 여행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 체류중인 친족의 중대한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제출받은 때에 긴급여권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5장 단수여권

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삭 제>

3.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삭 제>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21조(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여권 재발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여권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외관상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삭 제>

<신 설>

제23조의2(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3항제2호의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하 “국위손상”이라 한다)을 발생시킨 사람(이하 “국위손상자”라 한다)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실
 2.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 시정, 배상, 사죄 요청 등을 제기한 사실
 3.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사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신 설>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행위
2.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 행위
3. 마약 관련 범죄 행위
4. 출입국 관련 범죄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의 외국 법령 위반 행위로써 중대한 국위손상을 발생시킨 행위

제23조의3(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기간)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위손상자가 외국에서 국내 법상 법정형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3년
2. 국위손상자가 외국에서 국내 법상 법정형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년

3.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 2년

4. 국위손상자가 외국에서 국내 법상 법정형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1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의 내용 및 횡수, 국위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여권 등을 재발급 받는 사람
3. 여권발급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잘못된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신 설>

여권 등을 발급받은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

<단서 삭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제한되는 경우
2.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여권과	
연 락 처	(02) 2002 - 0133